

#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FAQ

---

2022. 11.





## 목 차

1. 로드맵의 핵심 전략은 무엇인지? ..... 1
2.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무엇인지? 방임적 안전관리로 이어질 우려는 없는지? ..... 2
3. 법령을 잘 지키지 않고 안전의식도 낮은 우리 현실에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맞는지? ..... 3
4. 위험성 평가가 무엇인지? 어떻게 바뀌고 중대재해 감소에 어떻게 기여하는지? ..... 4
5. 위험성 평가는 이미 도입된 제도 아닌지? ..... 5
6.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아예 감독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인지? ..... 6
7. 안전보건기준규칙을 예방규정과 처벌규정으로 분리하는 이유는? ..... 7
8. 예방규정과 처벌규정이 분리되면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지? ..... 8
9. 위험성평가의 적정한 실시, 재발방지 대책 수립·시행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요건을 명확화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의미는? 9
10. 중대법 제재방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? ..... 10
11. 원·하청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하려는 이유는? ... 11
12. 근로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이유는? 자기규율 예방체계 정착을 위한 근로자 참여 확대 복안은? ... 12



## 1. 로드맵의 핵심 전략은 무엇인지?

- 금번 로드맵은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 0.29‰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
- 이를 위해, 크게 2가지 핵심 전략으로 추진
  - **[전략1]**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·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「자기규율 예방체계」 구축을 지원하되,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엄중한 결과책임을 부여
  - **[전략2]**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중소기업, 건설·제조업, 추락·끼임·부딪힘, 하청 사고에 대해 집중 지원 및 특별 관리
- 아울러, 지속적인 중대재해 감축 기반 구축을 위해,
  - **[전략3]** 근로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안전보건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
  - **[전략4]** 현장 중심의 중대재해 감축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추진

## 2.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무엇인지? 방임적 안전관리로 이어질 우려는 없는지?

### □ 자기규율 예방체계란

- ①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규범·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규범을 마련하고,
- ② 평상 시에는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·제거하고
- ③ 사고 발생 시에는 기업의 예방노력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안전관리 방식을 의미

### □ 즉 자기규율 예방체계는,

- 안전이 기업 경영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안전을 시스템화하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로 방임적 안전관리와는 정반대되는 개념임

### □ 정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법령, 감독행정을 전면 개편할 계획

- 산업안전법령을 정비하여 평상 시에는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신뢰하고 점검·컨설팅을 통해 지원하되,
-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평상 시 예방노력의 적정성에 따라 엄중한 결과책임을 부여할 것임

### 3. 법령을 잘 지키지 않고 안전의식도 낮은 우리 현실에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맞는지?

- 과거 선진국에서 자기규율 예방체제로 패러다임 전환을 결단한 시점의 여건은 현재 우리와 상당히 유사함
  - \* 1970년 전후 영국 사고사망자는 현재 우리보다 약 100명 많았으며 당시 영국의 안전보건 법령은 현재 우리 안전보건규칙보다 더 세세히 규정
  - \*\* (로벤스 보고서) 즉흥적으로 그 때 그 때 만들어진 시대에 뒤떨어진 법률이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어 노사 당사자가 산업안전보건에 무관심에 빠져 있다.
- 선진국도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①'규제와 처벌' 방식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거나 ②자기규율 예방체제는 규제완화의 이론적 도구라는 등의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,
  -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 전략이라는 데 여·야, 노사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여 왔음
    - \* 로벤스 위원회는 당시 영국 노동당 정부에서 구성·운영되었으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대안으로 제시
- 우리도 로드맵 추진 과정에서 일부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,
  - 선진국과 같이 일관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다면 일터 안전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

#### 4. 위험성평가는 무엇인지? 어떻게 바뀌고 중대재해 감소에 어떻게 기여하는지?

-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·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·이행하는 제도로,
  - 선진국은 이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·이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위험성평가는 국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분야의 메가트렌드로 인정받고 있음
-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,
  - 사업장의 잠재적인 유해·위험요인이 상시적으로 발굴·개선되는 체계가 정착되어 지속가능한 중대재해 감축 기반 마련이 가능함
- 향후 위험성평가를 '핵심 위험요인 발굴·개선'과 '재발방지 중심'으로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'25년까지 의무화할 계획임



## 5. 위험성평가는 이미 도입된 제도 아닌지?

- 위험성평가는 국제적으로 안전보건관리의 초석으로 평가받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자 「자기규율 예방체계」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수단임
  - 그러나, 우리나라는 '13년에 이를 도입하면서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제반 법·제도를 정비하지 못함
-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와 상관 없이 감독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그대로 적용하여,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유인이 없었음
  - \* 기업의 66.2%가 위험성 평가 미실시 ('19년 작업환경 실태조사)
  - 또한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어렵고 힘들다고 인식하고, 근로자 참여도 낮은 상황임
- 로드맵을 토대로, 향후에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위험성평가의 현장 안착에 매진할 계획임
  - 산업안전법령 및 감독 체계를 위험성평가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전면 정비하고,
  - 체크리스트 기법, OPS(One Point Sheet)\* 방식 등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식을 개발·보급하고 위험성평가의 쏠 단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음
  - \* 사다리, 고소작업대 등을 사용하는 단순한 작업은 작업 전 1페이지 서술식 위험성평가 실시

## 6.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아예 감독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인지?

-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내실 있게 구축·운영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감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음
- 다만, 전체 감독의 절반을 차지하는 기획감독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하겠음
  - 평상 시 안전관리가 불량하거나 유사·동종 업계 사고사례, 경기·산업 동향 등에 비추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하여 기획감독을 시행할 계획임
    - \* (例) 식품제조업체 등 14만개 대상으로 식품혼합기 등 위험기계 자율점검 후 기획감독
  - 아울러 기업이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·이행 의무를 방기하지 못하도록 주기적(반기)으로 산재 미보고 및 은폐에 대한 기획감독도 실시할 예정임

## 7. 안전보건기준규칙을 예방규정과 처벌 규정으로 분리하는 이유는?

- 법령에 의한 방대하고 세세한 규제는 노사로 하여금 안전을 외부기관에 의해 강요된 법 기준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길들이는 부작용이 있음
  - 아울러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급변하는 신기술 반영이 지연되는 등 안전보건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문제도 심각함
  - 법령이 본래 가지는 제약 상 획일적·일반적인 것이 많아 개별 사업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음
- 이에 안전보건규칙을 처벌규정과 예방규정으로 분류하고
  - 처벌규정은 법규성을 유지하되,
  - 예방규정은 사업장에서 산재 예방을 위해 선택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고시, 기술가이드 형태로 풍부히 보급하고자 함
  - 이를 통해 현장에서 노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임

## 8. 예방규정과 처벌규정이 분리되면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지?

- 처벌규정과 예방규정의 분리는 現 안전보건기준규칙의 일부 조항은 처벌조항으로, 나머지 조항은 예방규정으로 단순 재분류하겠다는 의미가 아님
- 처벌규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목표나 일반원칙 등을 간결한 형태로 정하되,
  - 해당 처벌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세한 내용은 고시, 기술가이드 등 예방 규정으로 풍부히 제시한다는 의미임
- 예를 들어 “고소작업 시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”는 처벌규정으로 정한 뒤,
  - 고시나 기술가이드로 형태로 다양한 상황에 맞는 안전난간, 안전대, 추락방지망 등의 추락방호조치 기준을 제시하면 사업장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특성·여건에 가장 부합하는 방호조치를 하는 방식임
- 이에 추락방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고시·기술가이드와 유사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추락방호장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처벌 규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함

**9. 위험성평가의 적절한 실시, 재발방지 대책 수립·시행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요건을 명확화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의미는?**

- 위험성평가의 내실있는 운영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·이행만으로도 대부분의 중대재해는 예방 가능함
  - 이에 기업이 실제 안전역량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대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‘위험성평가’와 ‘재발방지대책 수립·이행’ 등 핵심 사항 중심으로 명확화하는 것이 중대법의 입법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함
- 구체적인 방안은 「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 TF」를 통해 논의토록 하겠음

## 10. 중대법의 제재방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??

-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기업은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투자를 늘리기보다 대형 로펌 자문 등을 통한 처벌 회피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
  - 중대법 적용 50인(억) 이상 기업(공사현장)의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하였음 ('22.10월말 기준, 전년동기 +17명)
- 중대법에 대해서는 ①형사처벌 강화, ②경제벌(과징금) 전환, ③산안법과 일원화 등 노사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음
  - '23년 초 「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 TF」를 구성하고, 선진국 사례, 중대법 수사·기소 현황 등을 토대로 전문가 논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겠음

## 11. 원·하청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하려는 이유는?

- 최근 원청의 책임을 강조하는 일련의 법·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고사망자 중 하청 근로자 비중은 제자리에 있음
  - 오히려 원-하청 산업안전 사각지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
  - 원청업체는 하청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시가 어려움에도 하청과 동일한 의무가 부여되어 현실적 어려움 호소
  - 하청업체는 안전보건관리를 원청의 일(의무)로만 생각하거나 원청에 거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경향
- 법적 지위가 다른 원·하청이 각각의 역할과 권한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원·하청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리해 줄 필요가 있음
  - 하청도 안전보건주체로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해예방 능력이 보다 제고될 수 있으며,
  - 원청은 하청의 의무이행을 촉진하고 지도·지원하는 역할에 보다 더 집중하게 되어 이종의 안전장치가 구축될 수 있음

## 12. 근로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이유는? 자기규율 예방 체계 정착을 위한 근로자 참여 확대 방안은?

- 중대재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노력에 더해 근로자의 주의의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
  - 근로자에게 안전은 '권리이자 의무'이며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행동이 습관화될 때 선진국 수준 달성 가능
  - 「자기규율 예방체계」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도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가 관건
-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사가 근로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할 계획
  -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근로자 기본 역할을 명시하고,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도 근로자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사업장을 10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확대
  - 아울러 현장 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안전 제안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사업장을 확대(100인→30인)하고 원·하청 안전보건협의체에 하청 근로자 의견제출권 부여도 검토하는 등 근로자 참여를 확대할 계획